

파주시 경 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경관 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운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경관 심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경관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맞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안 제7조)
- 경관 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중소기업
음부즈만 권고안 및 道내 시·군 기준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영문 단위 표기를 한글로 순화함(안 제22조)
 - 도로·철도·도시철도·하천 : 30억원→100억원 / 공원 : 5억원→10억원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경관법」 제11조 및 제26조
- 「경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8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6. 9. 11. ~ 2026. 10. 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1월 중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도시미관 지방규제 합리화 권고 사항(중소벤처기업부 읍부즈만지원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과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과주시보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공청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공청회에서”를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으며,”로, “알려야”를 “널리 알려야”로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시가 발주청인 사업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및 제2호 중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을 각각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0m 이상·연장 100m”를 “50미터 이상·총길이 100미터”로 하고, “연장길이 100m”를 “총길이 100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m”를 “20미터”로, “L=50m 이상, H=3m”를 “총길이 50미터 이상·높이 3미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시계획과 ☎ 940-5371
입안자	도시 계획 과 장	이 학 현
	도시디자인팀장	강 미 정
	담 당 자	김 민 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 파주시보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신 설>

<신 설>

②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 공청회-----

-----.

1. ~ 3. (현행과 같음)

④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으며, -----
----- 널
리 알려야 -----
-----.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도로, 철도, 도시철도사업
2. 「하천법」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하천시설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로 산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 다만,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2. 경간장 50m 이상·연장 10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육교, 연장길이 100m 이상의 터널·생태통로 등 도로

제2호나목에 따라 시가 발주청인 사업 중-----

-----.

1.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2.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② -----

-----.

-----.

1. -----

-- 10억원 이상-----
--.
-----.

2. ---- 50미터 이상·총길이 100미터 -----
----- 총길이 100미터 -----

시설물 3. 도로폭 <u>20m</u> 이상인 도로(변) 에 설치하는 <u>L=50m</u> 이상, <u>H=</u> <u>3m</u> 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시설물	----- 3. ---- <u>20미터</u> ----- ----- <u>총길이 50미터 이</u> <u>상 · 높이 3미터</u> ----- ----- -----
--	--

□ 관계법령 발췌서

「경관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 ⑤ 생략.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 ③ 생략.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 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전문개정 2022. 11. 1.]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 ④ 생략.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파주시 경관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경관 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1>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개정 2022.2.11>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 외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련 도면(경관현황도·경관기본구상도·경관계획도 및 경관설계지침도 등을 말한다)

3. 경관시물레이션 및 분석결과

4.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 지침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5.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제안서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완에 따르지 않으면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지구별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경관요

소 발굴 및 관리 등을 말한다)

2. 신규개발 사업지구 및 구시가지 등의 관리·개선
3. 경관계획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
4. 경관사업과 관련한 유형별 경관지침의 제시(디자인시설 및 색채계획 등을 말한다)
5. 야간경관 개선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3.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4. 사업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사업을 위한 사례검토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1>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파주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1>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및 경관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2.2.11>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경관협정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체결과 관련한 개인의 재산 손실에 따른 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토록 제시한 사항
3. 대지 내 공지(조경, 주차장, 공개공지 등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경관협정 관련 도서
3.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11>

제16조의2(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2.11]

제16조의3(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본조 신설 2022.2.11]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

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법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22.2.11>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시방서 및 설계도면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2.11>

제5장 경관위원회 등

제20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말한다.

②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을 인가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서식의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2. 용역사업 실시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전 또는 사업발주 전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도로, 철도, 도시철도사업
2. 「하천법」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하천시설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로 산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 다만,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1>
2. 경간장 50m 이상·연장 10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육교, 연장길이 100m 이상의 터널·생태통로 등 도로시설물

3.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50m 이상, H=3m 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시설물 제23조(건축물의 심의 및 자문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관리 구역 내 별표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수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나 발표자 등

2.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과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11.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건축물(제23조제1호 관련)

분 류		세부 항목
공공건축물	심의	가. 공공청사 나. 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사업하는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간건축물	자문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연면적 1,000㎡ 초과하는 공장 및 창고.

[별지 서식]

경관심의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		
사업구분	구 분	☐ 신규 ☐ 변경		
	대상시설			
	사 업 명			
	사업위치			
신청내용				
「파주시 경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도시미관 지방규제 합리화 권고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2-04. 경관심의를 받는 도로시설 등의 총사업비 기준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발주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철도시설, 도시철도, 하천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발전사업자 등(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규모)

- (도로, 철도 등)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철도시설사업·도시철도시설사업, 지자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자체가 발주청인 사업
- (하천시설)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자체가 발주청인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 경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다수의 지자체 조례에서 ‘도로 사업’에서는 100억원 이상, ‘하천 시설 사업’은 50억원 이상으로 심의대상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규정

- 경관심의로 인한 행정부담이 크나, 경관심의를 받아야하는 사회 기반시설의 종류와 규모의 편차가 커서 형평성 문제 발생

< 경관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A시	B군	C군	D시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심의 대상 및 규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등)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5.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6.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제22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경관심을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 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3.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6.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추정금액 2억 이상의 시설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별표1]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총사업비 10억 이상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6. 도시공원, 광장(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7. 경관조명공사

- 상위법령 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도로 500억원 이상, 하천시설 300억원 이상), 인근 지자체의 경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및 규모를 참고하여 심의 대상을 축소할 필요
- 용인시는 '16. 3월 도로와 하천은 경관심의 대상 규모를 완화하고, 건축물 심의대상인 하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노외주차장,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도시공원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삭제
 - *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3),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다수의 지자체에서 경관심의위원회의 과도한 운용을 지양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최소화하고 있음

용인시 경관조례	양주시 경관조례	부천시 경관조례	과천시 경관조례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로시설 사업 2. 삭제 <2016. 4. 15> 3. 삭제 <2016. 4. 15> 4.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5. 삭제 <2016. 4. 15> 6. 삭제 <2016. 4. 15> 7. 삭제 <2016. 4. 15> 8. 삭제 <2016. 4. 15> 9. 삭제 <2016. 4. 15> 10.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시철도시설사업	제29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9.>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 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 '24. 12월 경관심의 대상 중 도로는 50억 이상 사업에서 100억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은 대상에서 삭제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를 제외한다)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를 제외한다)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4. 삭제 5.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18.5월 경관심의 대상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중복되는 심의 사항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을 삭제하여 이중심의 방지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심의 대상 및 규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에서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개선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지방자치법 제22조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해야 하며,
-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지자체장이 정해야 함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 법제처)

- 경관법령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시설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개선 필요

2. 개선방안

- ☐ ①도로 및 하천시설 경관심의 대상 금액 상향(예: 100억원 이상), ②도시공원위원회, 공공디자인 위원회 등 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조치 필요사항 : 「경관 조례」 개정

- ☐ 경관심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 조례 규정 삭제

※ 조치 필요사항 : 「경관 조례」 개정

< 경관법 >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경관법 시행령 >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이하 생략)

2-06.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 절차 등 명확화

I.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경관법령에서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할 것과,
 -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청회 개최목적, 일시 및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등을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 : 「경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경관법」 제11조	「경관법 시행령」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전문개정 2022.11.1]

- (문제점)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공청회 개최 공고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거나 개최 공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고, '변경'시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①공청회 개최목적, ②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③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④발표자에 관한 사항, ⑤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⑥의견제출 방법, ⑦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

- 공청회 개최를 사전에 공고하지 않는 경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행정행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므로 개선 필요

II. 개선방안

- ☐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시 공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조례에 근거규정 마련

※ 조치 필요사항 : 「경관 조례」 개정

< 경관법 >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이하 생략)

< 경관법 시행령 >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 가. 공청회 개최목적
 -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전문개정 2022.11.1]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파주035)

1. 도시계획과-14923(2026.09.02)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경관 조례」 개정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통보서(2026A경기파주035) 1부. 끝.

여 성 가 족 과 장 김영미

여성정책전문위원

원 권문영

여성정책팀장

조영라

여성가족과장

김영미

2026. 9. 7.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17914

(2026. 9. 7.)

접수 도시계획과-16221

(2026. 9. 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4

팩스번호 031-940-4419

/ myjihee@korea.kr

/ 비공개(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35			
정 책 명	파주시 경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김민정	전화번호	031-940-53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9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계획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경관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도시계획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도시계획과-14922(2026. 9. 2.)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2026-35	도시계획과	파주시 경관 조례	원안동의

- 붙임 1. 결과통보서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윤수현 감사보통장: 이현 감사관: 유대승 전일 2026. 9. 7.

협조자

시행: 감사관-10716 (2026. 9. 7.) 접수: 도시계획과-15153 (2026. 9. 7.)

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감사관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840 팩스번호: 031-940-4089 / yoan55@korea.kr / ☎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35		
자치법규명	과주시 경관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윤수진
주 관 부 서	도시계획과	주 관 부 서 담 당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김민정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9. 4.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경관 조례」](일부개정안)

1. 도시계획과-14921(2026. 9. 2.)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불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도시계획과	「파주시 경관 조례」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불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1부. 끝.

예 산 법 무 과 장 명

주무관	권성원	규제개혁동계	팀장	김선정	예산법무과장	이재연	2026. 9. 3.
협조자							
시행	예산법무과-16243	(2026. 9. 3.)	접수	도시계획과-15073	(2026. 9. 4.)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경관 조례」(일부개정)	
2. 소관 부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 강미정 담당자 김민정
3. 관련법령 등	○ 「경관법」 제11조 및 제26조 ○ 「경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8조	
4. 주요골자	○ 「경관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맞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안 제7조) ○ 경관 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중소기업 음부즈만 권고안 및 道내 시·군 기준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영문 단위 표기를 한글로 순화함(안 제22조) - 도로·철도·도시철도하천 : 30억원→100억원 / 공원 : 5억원→10억원	
5. 심사의견	○ <u>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u> -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령 위임사항 및 중소기업 음부즈만의 「도시미관 지방규제 합리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관 심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u>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u>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